

제목 환경관리비 사용 문의

노인복지시설 공사 중 환경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가 없을 시 환경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부분을 환경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그 용도가 염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성됩니다. 환경보전비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수질오염과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며 폐기물처리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 등을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별표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해상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여부

모든 해상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사업자는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그밖에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 등을 할 경우 안전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 및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제목 소방시설 작동점검 관련 문의

모든 해상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사업자는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그밖에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 등을 할 경우 안전진단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안전진단 대상사업 여부 및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제목 모든 해상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여부

소방시설 작동점검 업체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시설 허가업체가 아닌 산업안전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를 용역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등록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 대행업체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동기능점검은 해당건축물에 점검결과를 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소방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목 유독물사업장에서 취급제한물질의 추가 사용 문의

유독물 사용업(황산, 질산, 염산 등)을 등록한 사업장인데 추가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취급제한물질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제조, 사용 등)하려는 전체 품목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취급제한물질은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질의 CAS번호 또는 영문명 등을 이용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수종사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상 운수종사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운수종사자 파견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운수종사자 파견업체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기록, 관리하여 협회 또는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운전종사자 고용(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의 적용범위 문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전기 · 소방감리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8호)에 의한 총 감리원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참조)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목 폐석면 처리방법 문의

비산 우려가 있는 폐석면을 보관 하여 운반, 처리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다.2)바)(3)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쁨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문의

당사의 알루미늄 제련, 정련 제조시설인 전기유도로(100kW/h) 2기, 전기보온로(60kW/h) 2기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기아크로도 큰 범위에서는 용해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아크로의 용량이 177kW/h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전기유도로와 전기보온로의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용용·용해로로 보아야 하며,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귀 사의 전기유도로와 전기보온로의 경우 총 연료사용(환산)량이 시간당 54.4kg으로서 이 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용용·용해로는 금속을 용용·용해시키는데 사용되는 각종 로를 총칭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배출시설(해당 시설)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용로, 정련로, 가열로 등 각종 용용·용해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177kW/h인 전기아크로가 단일 시설인 경우에는 규모 미만으로 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